2020. 8. 3.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

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 현장지침Ⅵ
- 재난대응 (풍수해) 자원봉사를 중심으로-

■ 본 지침은 재난지역(풍수해) 피해복구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대응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의 기본적인 방역기준을 제시하는 것임

■ 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시 방역 관리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제시한 것으로, 본 지침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지침*을 보완 적용하거나 행정부서 등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음

■ 재난의 종류, 현장의 성격, 주변 환경 등을 검토하여 지침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·장소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

* '코로나10대응-생활속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업무안내' (중앙방역대책본부, 2020.6)와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, 임시주거시설, 지진대피장소 등에 관한 운영지침' (행정안전부, 2020. 6.) 등

1 배 경

○ 풍수해 피해(8월~10월) 재난대응 자원봉사활동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증 확산 우려

○ 복합적인 재난에 대한 자원봉사 관리 원칙 마련 필요

2 방역 관리

○ **방역담당자 지정** : 활동 준비부터 종료까지 방역 관리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방역담당자 지정

- 코로나19감염예방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활동장소의 밀폐도와 밀집도 등을 고려한 위험 평가
- 방역수칙에 근거, 활동 특성에 따른 세부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

○ **방역부스 운영** : 재난자원봉사활동 현장에 방역부스를 설치하고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방역 관리

- 활동 시작과 종료시 열감지기 또는 체온계를 통한 발열자 확인, 건강 모니터링 양식 등에 기록하고 참가자 명부 작성

○ **방역수칙 안내** : 자원봉사자 공지 사항

- 활동 전후 손 씻기, 기침은 옷소매로 하기, 개인용품 사용하기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
- 대면시간을 축소하고, 악수나 신체 접촉 자제
- 활동 시 서로 충분한 거리(양팔 간격 등) 유지
- 활동 시 보건용・수술용・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 권장, 젖은 마스크는 교체하도록 안내
-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벗고, 주위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 자제
- 활동 중 이상 증상 발생 시, 선별진료소로 이송까지 격리공간에서 대기 (격리공간이 없는 경우,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)

○ **방역 점검 사항** : 방역현장 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 점검

- 손소독제, 비누, 마스크, 기타 필요한 위생물품을 구비하고 활동에 필요한 복장은 현장 상황에 따라 제시 (방수장갑, 조끼, 장화, 방역복 등)
- 활동 전/후 방역전문가 (방역봉사단 또는 보건소 등)의 협조를 통해 현장 소독
- 실내 활동시 주기적으로 환기 실시
- 활동에 사용한 조끼, 장화 등 다회용 물품은 활동 후 당일 소독

3 자원봉사자 관리

○ **사전 신청자 중심으로 현장활동 투입** : 미신청자 참가 자제

○ **신청 접수시 참가자의 해외여행 여부나 건강 상태 확인** : 감기증상 및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참여 불가

○ **피해지역에 최소한의 인원 파견** : 피해복구 활동분야에 숙련된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파견함으로써 복구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, 밀집화를 통한 감염증 발생을 사전에 차단

○ **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봉사자 배치 자제** : 피해지역(시군구)에 해당 지역 자원봉사자 우선 배치, 2시간 이상 원거리 이동이 요구되는 필요한 타 지역 봉사자 집단 배치 자제

○ **이동시 교통수단 및 주차안내** : 자원봉사자 이동시

- 사전 집결 없이 각자 피해복구 활동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. 개인 차량으로 이동 시 주차 관련사항을 안내
- 단체로 이동하게 될 경우에는 중소규모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유도
- 대형 버스 이용시 1좌석씩 띄우고 착석하도록 함

○ **휴식을 위한 자원 제공** : 무리한 활동으로 인해 지치지 않도록 휴식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, 음수 등은 1인용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이 지참할 수 있도록 조치

○ **자원봉사자 급식** : 도시락 지급을 우선 적용하되, 부득이 집단배식 시

- 점심시간 시차 운영
- 생활 속 거리두기 2m(최소 1m) 이상 준수
- 한 칸 띄어 일렬식사 또는 지그재그로 앉기
- 대화자제 등 권고

4 이재민 지원

○ **피해지역 주민 대면활동** : 피해지역 주민 및 이재민과 불필요한 접촉을 가급적 삼가하며 대면활동이 필요할 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. 특히 노약자 대면 시 방역에 더욱 유의

○ **물자지원** : 지급시간을 구역별로 조정하여 많은 이재민 등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고,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 2m(최소 1m)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권유

○ **단체 배식** : 이재민 대상 급식시 가급적 도시락으로 배부하되, 단체 배식이 필요할 시 급식 준비 자원봉사자 최소인원으로 운영, 철저한 위생관리 필수(투명 마스크, 장갑, 위생모, 앞치마 등 착용)